



독일의 단체협약 체결 현황과 단체협약상 직업훈련생의 급여 수준

이승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산별 단체협약 체계를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틀로 설정하고 있는 독일의 2014년 상반기 단체협약 체결 시즌이 마무리되었다. 봄철 신문지면의 한켠을 차지하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그림 1] 독일 단체협약 적용 근로자



자료 : IAB-Betriebspanel.

*이 글은 2014년 7월 출판되었는데, 2019년 4월 직업훈련생의 최저임금 적용여부와 관련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발견함에 따라 직업훈련생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으로 바로 잡아 수정·보완하였다(최초게시일: 2014년 7월 21일, 수정게시일: 2019년 4월 15일).

에 관한 기사도 단체협약의 결과에 관한 분석 기사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노동조합 가입률 및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2013년 통계상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인 약 1,310만 명의 근로자가 급여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¹⁾

산별 단체협약 체계와 함께 안정적인 직업훈련제도 또한 독일 노동시장의 특징인데, 독일에서는 직업훈련생에 대한 급여 수준도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 또한 2013년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의 핵심 이슈였던 법정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직업훈련생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 2014년 단체협약 체결 현황

산업분야별 임금협상 결과

2009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일부 EU 회원국들이 직면하였던 부채위기로 인해 유럽은 전반적으로 고용위기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여파로 인해 유럽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독일은 제조업의 견조한 흐름과 꾸준한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2009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직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지속되고 있고, '불안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노동시장 상황이나 경제성장을 측면에서 적어도 독일의 경우에는 불황의 여파에서 조금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단체협약상 임금도 낮은 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2013년 독일의 실질GDP 성장률은 0.4%를 기록하였고 소비자물가도 1.6% 상승하면서,²⁾ 노동계는 약 4.5% 내지 7%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1) 한스보클러 재단(Hans-Böckler Stiftung)(2014. 2), Statistisches Taschenbuch Tarifpolitik, S. 10.

2) Eurostat(2014. 5), Inflationsrate & Wachstumsrate des realen BIP 참조.

〈표 1〉 2014년 산업분야별 임금인상 요구안

(단위 : %)

산업분야	임금인상 요구율/액	산업분야	임금인상 요구율/액
화학산업	5.5	통신(Deutsche Telekom)	5.5
제과(구 동독지역)	6.0	인쇄업	5.5
발전산업(IG BCE)	5.0	일간신문	5.5
발전산업(Ver.di)	5.8	건설업	7.0
공무원	100유로+3.5	목재 및 섬유업	4.5

자료 : WSI-Tarifarchiv(2014. 5).

2014년 상반기까지 전체 산업분야 중 약 3분의 2 정도에서 체결된 임금교섭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인상률은 약 2.4%(발전산업) 내지 4%(화학산업)를 기록하며 마무리되었다. 대체로는 3% 수준에서 이루어진 2014년 임금교섭 결과를 살펴보면 협약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15년에도 약 2.5% 수준의 임금인상을 약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였던 인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3.0%의 임금인상률과 함께 최소 급여 인상액을 90유로로 설정하여 급여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임금인상 효과를 얻도록 하였으며, 호텔 및 숙박업의 경우에는 125유로의 일회성 상여금을, 목재 및 섬유업의 경우 4개월간 총 160유로의 상여금을 통해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약정하기도 하였다. 반면 사측은 임금인상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간(Nullmonat)을 설정하여 과도한 임금 부담을 다소 완화하기도 하였다.³⁾

이와 같은 단체협약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 산업분야에서 평균적으로 뚜렷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⁴⁾ 아직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철강, 금융 및 철도 분야의 단체협약도 전반기 단체협약의 결과인 3% 수준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Nullmonat' 설정 기간 : 화학/제과/건설(1개월), 통신(2개월), 인쇄업(4개월), 호텔 및 숙박업(5개월), 일간신문(9개월).

4) 한스뵉클러 재단(Hans-Böckler Stiftung) 언론보도용 자료(2014. 5. 30), "Tarifabschlüsse zwischen 2,4 und knapp 4 Prozent".

〈표 2〉 2014년 상반기 산업분야별 임금인상률

(단위 : %)

협약체결일	산업분야	임금인상률	
		2014	2015
2014.02.05	화학산업	3.7	-
2014.02.11	제과업(구 동독지역)	3.0	2.6
2014.02.14	발전산업	2.4	2.1
2014.03.12	페인트 및 도장 수공업	3.2	2.55
2014.03.25	양조업(바이에른 주)	3.0	2.7
2014.04.01	공무원	3.0	2.4
2014.04.09	통신업(Deutsche Telekom)	2.9	2.1
2014.04.14	인쇄업	3.0	1.0
2014.04.24	일간신문	2.5	1.5
2014.05.06	건설업(구 서독/구 동독)	3.1/3.8	2.6/3.3
2014.05.19	호텔 및 숙박(자를란트 주)	3.0	2.5
2014.05.22	목재 및 섬유업	3.0	-

자료 : WSI-Tarifarchiv(2014. 5).

단체협약상 직업훈련생의 임금교섭

청년층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되는 직업훈련생에 대한 급여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산업분야의 경우 교섭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 연계되는 견습생(Praktikum)제도의 경우 이번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직업교육(Ausbildung 또는 Berufsbildung)에 대해서는 직업교육법(BBiG)을 통해 직업훈련계약(직업교육법 제10조 내지 제11조)은 물론 그 임금(직업교육법 제17조 내지 제20조)과 훈련관계(직업교육법 제20조 내지 제23조)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생의 급여와 관련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직업훈련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직업교육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직업훈련생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도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직업교육법 제17조 제1항). 이러한 직업훈련계약은 직업교육법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 근로계약에 적

용되는 법률상의 규정과 원칙들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그 법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하겠다(직업교육법 제10조 제2항).⁵⁾

또한 직업훈련생은 사업조직법(BetrVG)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으며(사업조직법 제5조 제1항), 별도의 직업훈련생 총회 및 대표자를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에 참여하는 등 기업에서 단체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업훈련생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법률을 통한 보호는 물론, 노동조합의 가입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어 노조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인 직업훈련생을 위해 교섭에 임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경우 각 산업분야별로 격차가 있고 지역별로도 다소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협약상 임금인상률 및 상여금의 약정 내용 또한 모든 협약이 동일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격차와 다양성이 직업교육생에 대한 임금협약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상반기에 체결된 직업훈련생에 대한 임금협약을 살펴 보면, 산업별로는 월급여 기준으로 최하 332유로(튀링겐 주 운송산업의 1년차 급여)에서 최고 1,460유로(구 서독지역 건설업의 4년차 급여)까지 격차가 있으며, 동일 산업 내(3년차 직업훈련생 기준)에서도 지역별로 약 100유로에서 450유로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직업훈련생에 대한 임금교섭이 연방단위에서 진행되지 않고 지역별 교섭에서 결정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⁶⁾ 그러한 지역 격차는 단지 구 동독지역과 구 서독지역 사이에서만 아니라 권역별 단체협약인 경우 남부와 북부 사이, 더 세부적으로는 각 주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연방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직업훈련생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도 있다. 금융업 및 보험업, 인쇄업, 제지업을 비롯하여 독일 철도와 우편, 통신업, 공무원 등의 분야에서는 통일적인 직업훈련생 급여를 연방단위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

2014년 직업훈련생의 임금인상 수준 역시 전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영역에서부터

5) (Hrg.)Müller-Glöge, Preis, Schmidt; Schlachter, Monika, Erfurter Kommentar zum Arbeitsrecht, 13. Aufl., 2013, S.726

6) 한스뵉클러 재단(Hans-Böckler Stiftung) 언론보도용 자료(2014. 5. 7), "WSI-Tarifarchiv: Regionale Unterschiede bis zu 450€ im Monat".

〈표 3〉 단체협약상 직업훈련생 급여의 지역 격차

(단위 : 유로)

산업분야	지역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화학	북서부(Nordrhein)	854	936	1,020	1,092
	구 동독지역(Ost)	846	892	938	987
금속 및 전자	노르트뷔르템베르크/노르트바덴	917	975	1,061	1,118
	작센 주	890	941	992	1,043
자동차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564	594	656	718
	튀링겐 주	485	530	600	645
목재 및 섬유	베스트팔렌-리페	730	785	856	-
	작센 주	636	678	720	762
건설	구 서독지역(West)	669	1,028	1,299	1,460
	구 동독지역(Ost)	587	805	1,017	1,144
소매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697	777	888	946
	브란덴부르크 주	619	697	799	-
개별운송 및 교통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630	720	800	-
	브란덴부르크 주	557	608	659	-
호텔 및 숙박	바이에른주	692	780	869	-
	작센 주	500	570	650	-
건물청소용역	구 서독지역(West)	615	745	880	-
	구 동독지역(Ost)	540	655	775	-

자료 : WSI-Tarifarchiv(2014. 5. 1).

〈표 4〉 연방 단위 단체협약의 직업훈련생 급여

(단위 : 유로)

산업분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인쇄	853	905	956	1,007
금융	876	938	1,000	-
보험	853	928	1,007	-
연방공무원	833	883	929	993
주 공무원	807	861	911	980
철도	732	792	851	910
우편	760	840	920	1,000
통신	780	830	880	930

자료 : WSI-Tarifarchiv(2014. 5. 1).

낮게는 2.4%(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발전산업) 내지 10%(구 동독지역의 건물청소용역업) 까지 인상되기도 하여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별 교섭 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 직업훈련생의 법정 최저임금 적용대상 포함 관련 논의

독일의 직업훈련연구소(BiBB)의 설문에 따르면, 독일에서 직업훈련생이 직종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급여(수입)’라고 응답한 비율이 71%나 되었다.⁷⁾ 청년 남성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훈련 직종이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수준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 정비기술 분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근로의 내용적 흥미 역시 직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급여 수준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단체협약을 통해 직업훈련생의 급여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급여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단체협약의 적용이 없는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공업 분야나 변호사 등 자유직종과 같이 단체협약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법(직업교육법 제17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한(angemessen)’ 급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사용자 측과 직업훈련생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개별 직업훈련계약을 통해서도 그러한 격차가 좁혀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2015년부터 시행될 법정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에 직업훈련생이 포함될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관심이 많았다. 견습생 제도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생에 대한 저임금 문제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지난 7월 3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법률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 22 MiLoG)에 이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법정 최저임금제의 적용예외에 대해서는 균등대우원칙에 기초한 법적 측면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7) Beicht, Ursula; Krewerth, Andreas(2010. 6), “Geld spielt eine Rolle!”, BiBB Report 14/10, S.1.

만 근로계약으로서의 의미보다 교육 또는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직업교육 및 훈련생과 견습생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교육기회의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적 근로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주거비 지원, 교통비 지원 등 학생(교육생)의 지위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업훈련 고용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에는 직업훈련 일자리가 약 64만 5천 개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 경제위기와 함께 약 58만 개로 감소한 이후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에는 직업교육 일자리가 약 56만 개까지 감소하였으며, 신규 직업훈련계약 체결건수도 약 53만 건으로 감소하는 등 직업훈련 고용시장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직업훈련 고용시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추세가 단지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직업훈련계약 미체결건수(잔여 일자리)와 직업훈련 지원자 수의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표 5 참조). 즉 직업훈련 고용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원인에는 지원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한 대학진학률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 직종의 선택에 있어서도 일부 인기 직종에 편향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직업훈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잔여 일자리 수와 함께 잔여 지원자의 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인해 사용자의 노동비용이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성의 측

〈표 5〉 직업훈련 고용시장 동향

	모집건수	지원자	체결건수	잔여 일자리
2007	644,244	658,545	625,885	18,359
2008	635,849	630,857	616,342	19,507
2009	581,562	579,793	564,307	17,255
2010	579,565	571,976	559,960	19,605
2011	599,069	580,724	569,380	29,689
2012	584,532	566,895	551,258	33,274
2013	564,248	551,748	530,714	33,534

자료 : Berufsbildungsbericht(2014).

면에서 취약한 직업훈련 고용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청년실업률 및 저임금 노동인구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독일의 노동시장 체계상 해당 직종에 신규 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교육 또는 견습생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이 급격한 교육기회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직업훈련생 및 견습생이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었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전체적인 노동비용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LI**